

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

2026년 11월 1일 개원 예정인 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(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46) 신입 원아 모집 및 입소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■ 대상(2026년 기준)

○ 보육 정원 : 85명 (원활한 원 운영을 위해 연령별 모집인원 및 반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)

구 분	출생일 기준	모집인원	유의점
0세(3반)	2025. 01. 01.이후 출생	9명	○입소우선대기자 70% -거주자(매교역팰루시드아파트) 자녀 ○일반입소대기자 30% ※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대기자에 해당되는 아동은 아동등록 시 거주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(입소 확정 후 등본 등 별도 제출) ※ 거주자 자녀 입소 우선 확정자에 해당되는 아동은 입소 증빙서류 제출 시 까지 거주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소가 취소될 수 있음
1세(2반)	2024.01.01.~2024.12.31.	10명	
2세(2반)	2023.01.01.~2023.12.31.	14명	
3세(1반)	2022.01.01.~2022.12.31.	15명	
4세(1반)	2021.01.01.~2021.12.31.	20명	
5세(1반)	2020.01.01.~2020.12.31.	17명	
계		85명	

■ 접수기간 및 입소기준(입소일은 원사정에 의해 변경 될수 있음)

○ 입소일(예정): 2026. 11. 1.(일) (적응기간: 11. 2.(월) ~ 11. 4.(수) / 정식 일과 운영: 11. 5.(목))

○ 입소상담: 2026. 10. 1.(목)부터 평일10:00 ~ 18:00 (전화상담만 가능, 점심시간 13:00 ~ 14:00)

○ 입소대기신청: 2026. 10. 8.(목) 10:00 ~ 10. 20.(화) 15:00

※ 2026. 10. 20.(화) 15:00이후 신청한 아동은 신청기간 내 신청자보다 점수가 높더라도 대기자로 관리됩니다.

○ 접수방법: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 또는 아이사랑모바일어플 접수

○ 입소확정: 2026. 10. 20.(화) 15:00 이후 개별문자통보

○ 제출서류

• 서류제출기간: 2026. 10. 21.(수) 10:00 ~ 10. 23.(금) 15:00

•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: 어린이집 방문 원본 서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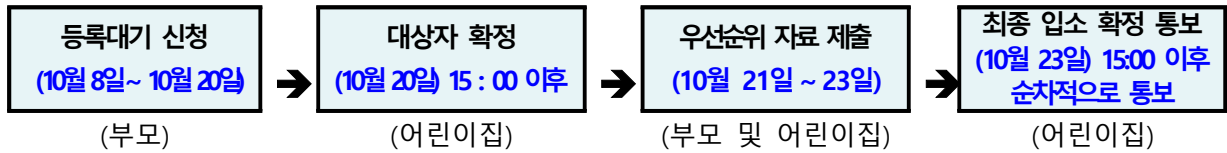
- 기본서류: 등본

- 추가서류: 기타 우선순위 확인서류

※ 입소확정 문자를 받으신 경우 입소결정을 위한 원본서류를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셔야 입소가 확정되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소가 취소됩니다.

- 입소기준 : 『영유아보육법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, 시행규칙 [별표8의3]에 근거한 입소 우선순위에 따름 ⇒ 입소 우선순위 참조

※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



■ 등록대기 신청 절차
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 로그인(10월 8일, 10:00부터 확인 가능)
 → 등록대기 아동등록 → 어린이집 검색 및 선택 → 등록 대기 신청
 → 대상자 확정(어린이집) → 우선순위 자료제출

- ※ 거주자 자녀 : 거주자 자녀에게 전체정원의 70% 입소우선권 부여 되는 어린이집으로 '무상 임대어린이집이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' 체크 필수(체크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- ※ 입소순위에 따른 아동등록으로 26년 11월 1일 개원 예정일에 입소아동 등록이 됩니다.

■ 입소 순위 배점

-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소
- 1순위 항목 당 100점(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,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),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
-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
-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합산 가능
-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,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
- 입소 우선순위 적용예외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는 전체정원의 70% 입소우선권 부여
- 2순위 항목 중 동일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는 신규 개원어린이집은 해당사항 없음
- ※ 입소 우선순위를 체크 한 경우 입소 관련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※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대기자에 해당되는 아동은 아동등록 시 거주 할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

■ 입소 대기 시 주의점

- 어린이집 대기는 3개소까지 가능
- 기존에 어린이집 다니고 있을 경우 대기 신청은 2개소까지만 가능
- 어린이집 입소 시 타 어린이집 대기 신청 건은 입소 후 7일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

※ 우선순위 및 구비서류(자세한 사항은 입소대기시스템 참고 요망)

입 소 순 위	구 비 서 류
■ 1순위 (각 항목별 100점)	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	- 시스템 자동연계
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	- 시스템 자동연계
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	- 시스템 자동연계
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*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의 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- 시스템 자동연계 (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)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⑥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	- 시스템 자동연계
⑥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* 「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*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	- ①②③④ 중 1부 필수 ①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③ 결혼이민자 중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: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(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) ④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⑦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(제3호), 순직자(제5호, 제14호, 제16호), 상이 자(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, 제17호)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자의 자녀 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	- 시스템 자동연계 (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& 가족관계증명서)
⑧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	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⑨ 재1형 당노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	- 진단서 - 의사소견서(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)
⑩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* 입소일 기준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*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, 해당항목 선택 가능	* ①② 중 1부 필수 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둘째 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: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
⑪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	- ①②③④ 중 1부 필수 ① 진단서 ② 소견서 ③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④ 임신확인서 * 임신확인일, 출산예정일, 병원명, 병원직인,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제출
⑫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 제19조제1항[별표2]제3호나목2)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 제19조제1항[별표2]제3호나목2)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의 다른자녀(형제자매인) 영유아	- 장애인증명서 제출 또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*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항목 점수가 있는 아동 입소(확정) 시 시군구에 보고하고, 시군구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아동 부모의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(공문 발송) - 가족관계증명서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「별지 제38호서식」 장애인증명서 *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

입 소 순 위	구 비 서 류
■ 1순위 (각 항목별 100점)	
⑭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*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- 취업의 기준 : 월 60시간 이상 근로 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(자영업자 포함) 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- 휴직자*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*다만, 육아휴직자의 경우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. 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* 취업준비자 - 직업교육훈련(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)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,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 - 단, 출석수업에 한함. -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다만,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(서류상 확인) * 자영업자 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※ <u>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</u> ※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-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-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. 다만, 농·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* 예술인 -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 ※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* 대학(원)생 -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등) 불인정 * <u>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</u>	- 맞벌이가구(근로자) * ①②③④ 중 1부(필수) : ① 재직증명서 ② 위촉계약서 ③ 근로계약서 ④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* ⑤⑥⑦⑧⑨⑩⑪ 중 1부(필수) ⑤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(근로복지공단) ⑥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⑦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⑨ 고용·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⑩ 소득금액증명원 ⑪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- 대학(원)생 : 재학증명서 1부 ※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- 취업준비자 * ①②③ 중 1부 또는 ④ 각 1부 : ①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·수료증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(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) ③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④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※ 구직활동 증명서류: 면접확인서, 입사지원서, 실습확인서,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, 이수 및 학원수강증(출석수업에 한함) - 예술인 : 예술인활동증명서 ※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- 자영업자 * 공통서류 :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* 일반 : ①②③④⑤ 중 1부 ①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③ 소득신고 증빙서류(세무서 접수증 등) ④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 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) ⑤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* 농·어업인 : ⑥⑦⑧⑨ 중 1부 및 ⑩⑪⑫ 중 1부 ⑥ 농(어)업인 확인서 ⑦ 농(어)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⑧ 어선원부등본 ⑨ 기타 농·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⑩ 매출계약서 ⑪ 판매증명서 ⑫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
■ 2순위 (각 항목별 50점)	
⑮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, 입양된 영유아, 가정위탁 보호아동,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※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항목은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경우 재원생이 없으므로 점수 신청할 수 없음	-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 - 입양된 영유아 : 입양확인서 - 가정위탁 보호아동 : 가정위탁보호확인서 -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: 형제자매 재원 확인 *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※단,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

※ 위 내용에 없는 내용은 2026년 보육사업 입소 및 퇴소기준의 내용을 따름.

※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(사원증 등)를 요구할 수 있음

■ 문의처(원장) : ☎ 010-8074-2581

시립팰루시드어린이집원장